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퇴직자 기념금품 집행과목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경기도 본청,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의정부시, 광명시, 광주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과천시

내 용

경기도 및 수원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퇴직공무원에게 그간의 공로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또는 행운의 열쇠 등을 구입하여 격려금품으로 지급하였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 제6호나목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은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예산과목에서는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경기도 및 수원시 등 15개 시·군은 2012. 8월 이후부터 2016. 6월 까지 퇴직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행운의 열쇠 등 구입비 1,137백만 원을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이 아닌 포상금⁵⁾ 또는 일반운영비⁶⁾ 예산과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생계비 지원 경비,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등

6)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부천시장,
화성시장, 의정부시장, 광명시장, 광주시장, 양주시장, 안성시장, 구리시장,
포천시장, 의왕시장, 여주시장, 과천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이 아닌 다른 예산과목에서 퇴직자 기념금품 구입 경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